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4260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23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송애순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2.10.12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4. 8. 26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김영훈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인	2021.01.22.~	230,000,000		2021.01.22.	2020.12.01.		
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1.01.22.			
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1.01.22.~ 2023.01.21.	230,000,000		2021.01.22.	2020.12.01.	2024.6.19.	
<p><비고> 김영훈: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임.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을구 순위번호 3번 주택임차권등기(단,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).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<p>비고란</p> <p>임차권자가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 함.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42602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47-14

동서파크뷰

비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39번길 34-5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

5층 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(단지형다세대주택))

1층 13.37㎡

2층 113.14㎡

3층 113.14㎡

4층 113.14㎡

5층 113.14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301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48.20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47-14

대 228.3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28.3분의 27.5736

감정평가액

229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4.02

9,241,000

924,100

2회

2026.05.07

6,469,000

646,900

3회

2026.06.11

4,528,000

452,800

4회

2026.07.16

3,170,000

317,000

임차권자가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함.